

□ 제25대 의원 및 특별의원 보궐선거 일정(안)

일 자	업 무	관련규정	규 정 내 용	소 관
3.13(목)	<u>선거일 공고</u>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1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제15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늦어도 선거일 15일전 선거일 공고와 동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선거일정 검토) 선거일 공고하는 날부터 열람개시일 2일전까지	회장 회장 선관위 회장 회장
3.15(토)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선거인명부 위원회 송부 <u>제납회비 납부기한 만료</u>	제16조제1항 제16조제6항 정관 제63조제2항	선거일 공고하는 날부터 3일이내 선거인명부 작성한 즉시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날(선거권)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피선거권)	회장 회장 회장 회장
3.16(일)	<u>선거인명부 열람 개시</u>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개시 <u>후보자등록 개시</u>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늦어도 선거일 12일전부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부터	회장 회장 선관위
3.20(목)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u>후보자등록 마감</u>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부터 5일간	회장 선관위
3.21(금)	(2차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공고 투표소 공고 투표안내문 및 위임장 발송	제25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후보자심사확정, 후보자/투표소 공고) 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 다음날 선거일 7일전까지 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 다음날	선관위 선관위 선관위 선관위
3.22(토)	선거인명부 확정	제21조	선거인명부 열람마감일 2일후	회장
3.25(화)	개표소 공고	제37조제1항	선거일 3일전까지	선관위
3.27(목)	후보자일람표 게시 투표소 설치 개표소 설치	제27조제5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선거일 1일전부터 선거끝날때까지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일전일까지	선관위 선관위 선관위
<u>3.28(금)</u>	선거일(투표 및 개표) (3차 선거관리위원회)	제15조제1항	(당선인 확정 및 공고/선거록 작성)	선관위 선관위
3.29(토)	당선인 공고 및 통지	제45조제4항	당선인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선관위

※ 상기 일정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